

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(제17조제1항 관련)

1.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

가. 장비: 각 1대 이상. 다만,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.

- 1) 유속계
- 2) 수온 측정기
- 3) 수소이온농도(pH) 측정기
- 4) 용존산소(DO) 측정기
- 5) 자동시료채수기
- 6) 디지털압력계
- 7) 접지저항계
- 8) 절연저항 측정기
- 9)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설비
- 10) 연막시험용배풍기
- 11) 이동식 유량계
- 12)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 실험분석장비
- 13) 총유기탄소량(TOC) 실험분석장비
- 14) 부유물질(SS) 실험분석장비
- 15) 총질소(T-N) 실험분석장비
- 16) 총인(T-P) 실험분석장비
- 17) 총대장균군수 실험분석장비
- 18) 생태독성 실험분석장비
- 19) 산화환원전위(ORP) 측정기
- 20) MLSS(Mixed Liquor Suspended Solid) 측정기
- 21) 진동측정분석기
- 22) 소음측정기
- 23) 회전계
- 24) 포터블 캘리브레이터
- 25) 전력품질분석기
- 26) 유량계

나. 기술인력

- 1) 다음 가) 또는 나)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
 - 가) 환경, 화공, 기계 또는 전기 관련학과 박사
 - 나) 상하수도, 수질관리, 폐기물처리, 화공, 건설기계, 산업기계설비, 발송배전, 전기응용 또는 산업계측제어 기술사
- 2) 다음 가)부터 라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사 각 1명 이상
 - 가)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화공, 화학분석 또는 생물공학 기사
 - 나) 일반기계, 기계설계, 건설기계설비, 공조냉동기계 또는 설비보전 기사

- 다) 전기 또는 전기공사 기사
- 라)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
- 3) 다음 가)부터 마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
 - 가) 수질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
 - 나) 기계가공조립, 기계설계, 정밀측정, 건설기계설비, 공조냉동기계 또는 기계 정비 산업기사
 - 다) 전기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
 - 라) 토목 산업기사
 - 마) 수질환경 산업기사
- 4)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
- 2. 하수관로(중계펌프장은 제외한다) 기술진단전문기관
 - 가. 장비: 각 1대 이상. 다만, 이동식 유량계는 3대 이상으로 한다.
 - 1) 유속계
 - 2) 수온 측정기
 - 3) 수소이온농도(pH) 측정기
 - 4) 용존산소(DO) 측정기
 - 5) 자동시료채수기
 - 6) 디지털압력계
 - 7) 접지저항계
 - 8) 절연저항 측정기
 - 9)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설비
 - 10) 연막시험용배풍기
 - 11) 이동식 유량계
 - 12)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(BOD) 실험분석장비
 - 나. 기술인력
 - 1) 다음 가) 또는 나)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
 - 가) 상하수도 또는 수질 관련학과 박사
 - 나) 상하수도 또는 수질관리 기술사
 - 2) 토목 또는 수질환경 기사 1명 이상
 - 3) 토목 또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
 - 4) 기계 또는 전기 산업기사 1명 이상
 - 5) 환경측정분석사 1명 이상

비고

1.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.
2.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설비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,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경우에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 및 인력

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3. 기술인력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4.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,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,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5.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6. 산업기사는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7.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, 폐기물처리, 화공, 화학분석, 생물공학 기사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8.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나목2)와 같은 목 3)의 토목 및 수질환경 자격 종목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